

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9-35호

## 초량동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관리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연속지적도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 "<http://luris.mltm.go.kr>"에서 열람 가능)는 동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6월 5일  
부산광역시 동구청장

### 1.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

○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3	12	4	국지 도로	155	초량동 973-3	초량동 991-106	일반 도로	-	부고1969-39호 (69.4.8.)	
변경	소로	3	12	4	국지 도로	155	초량동 973-3	초량동 991-106	일반 도로	-	-	도로모퉁이 확보

○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 3-12호선	소로 3-12호선	시점부 도로모퉁이 확보	시점부 교차로 도로모퉁이를 확보하여,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고,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.

2. 관계도면 : 게재 생략(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). 끝.